

사천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 대한과태료징수조례 폐지조례(안) 심사보고

(의안번호 제23호, 2004. 6. 28)

총 무 위 원 회
2004. 6. 29.

1. 심사 경과

가 2004. 6. 18 : 사천시장 제출

나. 2004. 6. 19 : 총무위원회 회부

다. 2004. 6. 28 : 제86회 사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중 제7차 총무위원회 상정

2. 제안 설명(민원지적과장 엄정기)

가. 폐지이유

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의 통합법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정 시행으로 사천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 대한과태료징수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 내용

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가 그 토지를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반하여 시장이 과태료 처분을 하였을 경우, 과태료 징수절차는 당해 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(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4조제4항) 있어 이 조례는 폐지함.

3. 검토 보고 요지(전문위원 김태주)

- 본 폐지조례(안)은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의 통합법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정 시행으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서
- 본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징수 절차는 2004. 6. 7 조례 제585호로 개정된 사천시도시계획조례 제65조에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는 폐지하여도

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5. 심사 결과 : 원안 가결

6. 소수 의견 : 없음